

HACCP 미적용 도축장 행정처분 지침

농림부

1. 필요성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03. 7. 1일부터 모든 소·돼지·닭 도축장에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의무 시행
 - 미시행도축장에 대하여는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 필요
- '02. 8. 5 동법시행규칙 개정으로 HACCP 미적용작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함에 따라 행정처분기관인 시·도와 적용대상 도축장의 영업자 모두가 '03. 7. 1일 이후 세부적인 행정처분 방안에 대해 관심이 높음에 따라 행정행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통일된 지침 필요

2. 현황

■ 도축장 HACCP 적용 방법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농림부 고시)에 의거 도축장은 일일 평균 도축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연차적으로 HACCP을 의무적용
 - 2000. 7. 1: 소 100두, 돼지 1000두, 닭 100천수 이상 도축장
 - 2001. 7. 1: 소 50두, 돼지 500두, 닭 50천수 이상 도축장
 - 2002. 7. 1: 소 30두, 돼지 300두, 닭 30천수 이상 도축장
 - 2003. 7. 1: 소 30두, 돼지 300두, 닭 30천수 미만 도축장
- 도축장의 영업자는 HACCP 7원칙에 근거하여 자체적인 HACCP 관리기준서를 작성하여 도축과정에서 운용하고 이를 기록관리
 - 정부는 HACCP 운용실태를 검증하고 문제발생시 시정토록 조치

○ 법적 근거는 없으나 우리부 지시에 의거 HACCP 운용의 활성화를 위해 검역원으로 하여금 HACCP 적용이 가능한 도축장에서 신청이 있을 경우 HACCP 적용업소 업소로 지정(위생51574-1174 호; '00. 6.30)

■ HACCP 적용 현황(2003. 4. 7일 기준)

- HACCP 적용대상 도축장 : 162개소(소·돼지 109, 닭 53)
- HACCP 적용업소('03. 4. 7일 기준) : 61개소(전체 대상의 38%)
 - 소·돼지도축장 : 44개소(대상 소·돼지도축장의 40.4%)
 - 닭 도축장 : 17개소(대상 닭도축장의 32.1%)
- ※ HACCP 적용심사중인 업소(15개소 : 소·돼지 13, 닭 2)를 포함할 경우는 총 76개소(전체대상의 47%)에서 HACCP 적용중

3. 행정처분 관련규정

○ 영업자는 당해 도축장에 적용되는 자체위해요소중

점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여야 함(단, 도서지역은 제외)(법 제9조제2항; '01.12.31 규정신설).

-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규정

※ 단, 동법 부칙규정에 의거 2001년도 1일 평균 도축실적이 30두 미만인 소도축장, 300두 미만인 돼지도축장, 그리고 3만수 미만인 닭도축장은 2003. 6.30일까지 동 규정 유예

○ 시·도지사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 또는 6월의 범위내에서 영업정지 가능(법 제27조; '01.12.31 관련내용 추가규정)

○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법시행규칙 제41조관련 별표11)

4. 2003. 7. 1일 이후 세부 행정처분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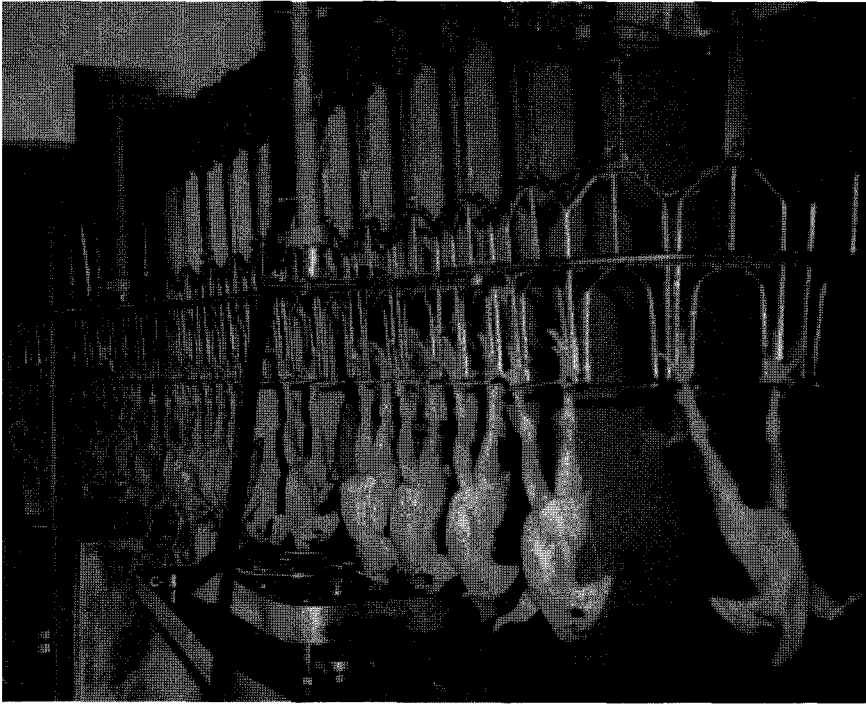
■ 세부기준

○ 2003. 7. 1일 이전에 검역원으로부터 HACCP 적용작업장으로 지정을 받은 도축장은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

○ 2003. 7. 1일까지 검역원으로부터 HACCP 적용작

〈법시행규칙 제41조관련 별표 11〉

위 반 행 위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 작성된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업소로 보되 실태조사후 행정처분 내역 판단
- 동기준 미작성 도축장 : “1개월” 영업정지
- 동기준은 작성하였으나 이를 운용하지 않고 있는 도축장 : 경고
- 최근 1년 이내에 3차 처분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주기를 감안하여야 하며, 4차 이상 위반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6월 또는 영업취소처분 조치
- 행정처분시 위반사항 보완기한은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할 것

업장으로 지정을 받지 못한 도축장은 아래 기준에 의거 조치

① 검역원에 HACCP 적용작업장 지정 신청 중인 도축장

-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한 업소로는 보되, 동 기준의 운용여부는 실태조사후 행정처분 여부 및 내역 판단

• 실태조사 결과 HACCP 운용 미흡도축장 : “경고” 조치

※ 원칙적으로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운용 중인 것으로 보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운용 중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검역원과 협력하여 최종 판단

② 검역원에 HACCP 적용작업장 지정 신청도 하지 않은 도축장

■ HACCP 적용여부 실태조사 방법

○ 도축장에서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작성·운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는 현행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농림부 고시)”의 “별지 제2호서식. 도축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실시 상황평가표” 및 “별표 1. HACCP 계획 점검표”에 의거 실시

○ 실태조사는 해당 도축장을 관할하는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팀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실태조사과정에서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운용 중인 것으로 볼 여지가 높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검역원의 HACCP 인력을 포함하여 실시

- 조사팀은 가능하면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14조제3항 관련 축산물위생관련 연구기

관·단체, HACCP 전문가·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

- 실태조사 세부기법은 검역원에서 그간 HACCP 적용업소 지정 경험을 근거로 '03. 6월초까지 세부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도에 제공
 - 검역원은 상기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제공하고 동 지침의 일관된 운용을 위하여 금년 6월 중에 시·도 HACCP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도축장 HACCP 작성·운용 검증교육” 실시
 - ※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SIS)의 “Supervisory Guideline for PATHOGEN REDUCTION/HACCP Regulatory Requirements-1998” 참조

5. 검역원 및 시·도 조치사항

■ 검역원

- '03. 6. 30일까지 검역원에 제출된 “HACCP 적용작업장 지정신청업소”에 대하여 가능한 조속히 지정작업 완료
- '03. 7. 1일부터 시·도에서 관내 도축장의 HACCP 운용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상세한 기술적 지침인 “도축장 HACCP 적용여부 판단 업무세부지침”을 2003. 6월까지 마련하여 시·도에 제공하고 시·도 HACCP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동 지침에 대한 교육 실시
- 시·도에서 관내 도축장의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 작성·운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자 조사팀을 구성하고 인력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면 HACCP 인력 제공

- 그간 도축장의 HACCP 운용 활성화 및 적용작업장에 대한 우대차원에서 시행하던 HACCP 적용도축장 지정업무는 '03. 6. 30까지만 수행하고, 이때 까지 처리되지 않은 지정신청서는 해당 시·도에 반려

■ 시·도

- 관내 HACCP 적용대상 도축장의 영업자에게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03. 6. 30일까지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대상이 됨을 통보
 - 관내 도축장중 HACCP 미시행 도축장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 필요
- HACCP 적용작업장 지정신청이 가능한 도축장을 모두 파악하여 검역원에 적용업소 지정신청
 - ※ 자체적으로 HACCP을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도축장에 대해서도 검역원에 지정신청을 하도록 조치
- 관내 도축장의 HACCP 운용실태를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소속 축산물검사관에 대한 HACCP 교육 실시
 - 농림부에서 1999년 제공한 도축장 HACCP 적용 매뉴얼중 “도축장 HACCP 검증지침” 및 “정부위생당국 HACCP 감독지침” 중점 교육
- '03. 7. 1일 이후에는 검역원으로부터 HACCP 적용작업장으로 지정받지 못한 도축장에 대하여 HACCP 운용실태 조사 및 행정조치
- '03. 7. 1일 이후에는 검역원에서 제공할 “HACCP 적용여부 판단 업무세부지침”에 따라 HACCP 운용여부 판단 C